

제116회 세무회계1급

(A형)

[illegible]

(B형)

[illegible]

(A형)

[illegible]

(B형)

[illegible]

세법1부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포함) · 부가가치세법

객관식

문항당 4점

1.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국세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2025.12.31.) 자료이다.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자료 외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구분	배당지급법인	(주)국세의 지분율	(주)국세가 받은 25년 귀속 배당금액
1	영리 외국법인 A	60%	의제배당액 8,000,000원
2	영리 내국법인 B	50%	현금배당금 10,000,000원
3	영리 내국법인 C	40%	보유한 지분 전부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액 8,000,000원
4	유동화전문회사 D	30%	현금배당금 4,000,000원

- (1) A, B, D법인에 대한 주식은 취득한 이후 주식수, 장부가액,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
(2) 위의 주식은 모두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이다.
(3) A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CFC)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며, 유보소득에 대하여 (주)국세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다. 배당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A법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실제 부담한 세액은 0원이다.
(4) B법인 및 C법인은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5) D법인은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한다.

- ① 익금불산입 8,000,000원
② 익금불산입 10,000,000원
③ 익금불산입 26,000,000원
④ 익금불산입 30,000,000원

[답] ②

- 익금불산입 : $10,000,000\text{원} \times 100\% = 10,000,000\text{원}$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조세의 제10기 사업연도(2025.1.1.~2025.6.30.)에 대한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이다. 다음 중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한다.

- (1) (주)조세는 2025.01.01.에 기계장치(1년 경과된 중고자산에 해당함)를 외국의 법인사업자로부터 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해당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면서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체재비를 5,000,000원 지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차) 기계장치 | 5,000,000원 | (대) 현금 | 5,000,000원 |
|----------|------------|--------|------------|
- (2) (주)조세는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상각한 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차) 감가상각비 | 2,500,000원 | (대) 감가상각누계액 | 2,500,000원 |
|-----------|------------|-------------|------------|
- (3) (주)조세는 당초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각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4) 업종별 내용연수는 5년이며,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 정액법 : 0.200, 정률법 : 0.451
- (5)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며, 이에 따른 세무조정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

- ① 손금산입 3,382,500원(△유보)
- ② 손금산입 3,137,500원(△유보)
- ③ 손금산입 2,010,000원(△유보)
- ④ 세무조정 없음

[답] 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따라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체재비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 회사의 감가상각비 범위액 : $(20,000,000\text{원} + 5,000,000\text{원}) \times 0.451 \times 6/12 = 5,637,500\text{원}$

• 문제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이에 따른 세무조정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감가상각 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금산입 처분을 한다.

∴ 5,637,500원 - 2,500,000원 = 3,137,500원(△유보)

3.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및 화해 권고 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및 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경우에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 ②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 ④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금액으로 한다.

[답] ④

- ①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 제1항 제10호
- ②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 제4항
- ③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 제5항
- ④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 제2항,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약매출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수행하는 건설등의 용역제공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공사여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인식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③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④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답] ④

- ①,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건설등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6항
-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단서,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세무의 제10기(2025.1.1.~2025.12.31.)의 인건비 관련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 되는 세무조정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구분	급여	상여금
대표이사	100,000,000원	20,000,000원
경리부장	50,000,000원	15,000,000원
생산과장	40,000,000원	5,000,000원

(1) 정관에 의한 급여지급 규정에는 연간 급여의 1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상여금 외에 경리부장에게 지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5,000,000원이다.
(3) 위 생산과장은 특수제품 생산직 종사자로서 마지막 제조단계에 근무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조단계는 당해 마무리 되지 못하여 재공품으로 보유 중이다.

- ① 60,000,000원
- ② 55,000,000원
- ③ 15,000,000원
- ④ 50,000,000원

[답] ② 55,000,000원

- 대표이사 상여금 : 정관 규정상 임원 상여금의 한도액 : 100,000,000원×10% = 10,000,000원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10,000,000원 (상 여)
- 경리부장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생산과장 : 아직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재공품 재고로 세무조정 한다.
 <손금불산입> 재공품 45,000,000원 (유 보)

6. 다음 중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법인이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내국법인이 주거용 건축물(등기분)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내국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권리로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내국법인이 파산선고에 의하여 등기된 토지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답] ②

-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 ②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4호
- ④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1호

7.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국고보조금부터는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단, 20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가능).
-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은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금액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야 한다.
- ③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 ④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답] ②

- ①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국고보조금은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특정사업의 손실보전 시에도 손실과 상계되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까지

적용하는 경우 이중지원의 소지가 있어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②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填)에 충당할 수 있다 (과세이연은 임의 조항이다).
- ③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8.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ㄹ.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ㅁ.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ㅂ.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료

- ① ㄱ, ㄴ, ㄹ, ㅁ
- ② ㄴ, ㄹ, ㅁ
- ③ ㄱ, ㄴ, ㄹ
- ④ ㄴ, ㄹ

[답] ④

구분	손금 여부
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손금불산입
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손금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손금불산입
ㄹ.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손금
ㅁ.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손금불산입
ㅂ.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료	손금불산입

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④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답] ③

- ①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 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1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 ②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④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전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②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1호
-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11. 일반과세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는 2025년 10월 30일 폐업하였다. 폐업 시 사업장의 잔존재화가 다음과 같은 경우 2025년 제2기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모든 잔존재화는 취득 당시 매입 세액공제를 받았다.

※ 잔존 재화내역			
구분	취득일	취득원가	폐업 당시 시가
제품	2025년 9월 1일	9,000,000원	11,000,000원
건물	2023년 12월 1일	100,000,000원	150,000,000원
기계장치	2023년 10월 31일	30,000,000원	10,000,000원

- ① 89,000,000원
- ② 91,000,000원
- ③ 169,000,000원
- ④ 171,000,000원

[답] ② 91,000,000원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및 제66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제품 : 11,000,000원(시가)
- 건물 : $100,000,000원 \times (1 - 5\% \times 4) = 80,000,000원$
- 기계장치 : $30,000,000원 \times (1 - 25\% \times 4) = 0원$

12. 거주자 B는 2025년 7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2025년 제2기 과세기간의 재고매입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세법상 적절한 절차와 신고가 이루어졌다.

(1) 2025년 7월 1일 현재 보유자산 현황			
내역	취득일	취득가액(공급대가)	시가
상품	2025.06.30.	1,100,000원	2,200,000원
기계장치	2025.01.01.	확인 안 됨	55,000,000원
비품	2024.09.01.	22,000,000원	11,000,000원
건물	2022.05.31.	110,000,000원	88,000,000원
(2) 업종별 부가가치율 : 20%			

- ① 5,670,000원
- ② 5,764,500원
- ③ 5,859,000원
- ④ 8,127,500원

[답] ② 5,764,500원

- (1) 상품 : $1,100,000\text{원} \times 10/110 \times (1 - 0.5\% \times 110/10) = 94,500\text{원}$
 - (2) 기계장치 :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 (3) 비품 : $22,000,000\text{원} \times 10/110 \times (1 - 50\% \times 2) \times (1 - 0.5\% \times 110/10) = 0\text{원}$
 - 2025.1.1.부터 2025.6.30.까지의 기간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경과된 기간수를 계산한다.
 - (4) 건물 : $110,000,000\text{원} \times 10/110 \times (1 - 10\% \times 4) \times (1 - 0.5\% \times 110/10) = 5,670,000\text{원}$
 - 2025.1.1.부터 2025.6.30.까지의 기간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경과된 기간수를 계산한다.
- ∴ 재고매입세액 : (1) + (2) + (3) + (4) = 5,764,500원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상 기록물 제작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④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답] ③

- ①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변경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③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답] ④

- ① 부가가치세법 제110조 제2항
- ②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2항
-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7항
- ④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③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재화에 해당한다.

[답] ②

- 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 ②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주관식(단답형)

문항당 4점

※ 반드시 OMR 카드 앞면의 주관식 답안란에 답안을 작성하시오(연필 또는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금지).

1. 다음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장부를 기장함)이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회계의 2025년 자료이다. 자료를 보고 (주)회계의 간주익금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 (1) 2021년 1월 31일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전세로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① 건물의 취득가격 : 100,000,000원
 - ② 토지의 취득가격 : 200,000,000원
 - ③ 계약기간 : 2021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 ④ 임대보증금 : 250,000,000원
- (2) 위 임대보증금에서 이자수익 500,000원, 유가증권 처분이익 2,000,000원, 유가증권 처분손실 3,000,000원이 발생하였다.
- (3)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1.2%, 당해연도는 365일로 가정한다. 또한 위 임대목적용 건물과 관련하여 차입금 적수는 7,000억원, 자기자본적수는 3,000억원을 가정한다.

[답] <익금산입> 간주임대료 1,300,000원(기타사외유출)

- 보증금 적수 : $250,000,000\text{원} \times 365 = 91,250,000,000\text{원}$
- 건설비 적수 : $100,000,000\text{원} \times 365 = 36,500,000,000\text{원}$
- 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 500,000원
-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상계 후 음수가 나오면 0으로 본다.
- 간주익금 : $(91,250,000,000\text{원} - 36,500,000,000\text{원}) \times 1/365 \times 1.2\% - 500,000\text{원} = 1,300,000\text{원}$

2. 다음은 (주)국가의 제5기(2025.1.1.~2025.12.31.) 사업연도의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 중 세무조정 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해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15,000,000원(원천징수세액 4,125,000원 포함)
- ② 증빙불비 기업업무추진비 : 6,000,000원(귀속자 불분명)
- ③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 800,000원
- ④ 특정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 4,000,000원
- ⑤ 귀속자가 불분명한 현금매출 누락 : 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 ⑥ 비실명 채권이자 : 5,000,000원(원천징수세액 1,000,000원 포함)
- ⑦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4,500,000원
- ⑧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리스) : 2,000,000원

[답] 7,925,000원

- 법인세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8조,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제106조
- ①4,125,000원 + ③800,000원 + ⑥1,000,000원 + ⑧2,000,000원 = 7,925,000원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주)조정의 제11기 사업연도(2025.1.1.~2025.12.31.)의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이다.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 (1)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은 300,000,000원이다(특수관계자간 매출액은 없다).
- (2) 손익계산서상 기업업무추진비는 48,000,000원(문화 기업업무추진비 8,000,000원 포함)이며, 모두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
- (3) (주)조정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채권 6,000,000원을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였다(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다).

[답]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9,720,000원(기타사외유출)

-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 48,000,000원 + 6,000,000원^(주1) = 54,000,000원

(주1)채권포기액의 경우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① + ② = 44,280,000원
 - ①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36,000,000원 + 300,000,000원 × 30/10,000 = 36,900,000원
 - ②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Min(8,000,000원, 36,900,000원 × 20%) = 7,380,000원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54,000,000원 - 44,280,000원 = 9,720,000원

4. 다음 자료에 따라 토지, 기계장치 및 건물을 공급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주)A는 2025.3.31.에 토지와 기계장치, 건물을 1억원에 일괄 양도하고, 매각 대금은 인도시점에 전액 수령하였다.
- 양도한 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각 자산의 감정평가금액 및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다.

구분	토지	기계장치	건물	합계
기준시가	4,000,000원	알 수 없음	36,000,000원	40,000,000원
장부가액	6,000,000원	20,000,000원	24,000,000원	50,000,000원
취득가액	6,000,000원	30,000,000원	24,000,000원	60,000,000원

- 위의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답] 94,000,000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① 기계장치 : $100,000,000\text{원} \times 20,000,000\text{원}(\text{기계장치 장부가액}) / 50,000,000\text{원}(\text{유형자산 장부가액}) = 40,000,000\text{원}$
- ② 토지(면세) : $100,000,000\text{원} \times 30,000,000\text{원}(\text{토지 + 건물 장부가액}) / 50,000,000\text{원}(\text{유형자산 장부가액}) \times 4,000,000\text{원}$
(토지 기준시가) / $40,000,000\text{원}(\text{토지 + 건물 기준시가}) = 6,000,000\text{원}$
- ③ 건물 : $100,000,000\text{원} \times 30,000,000\text{원}(\text{토지 + 건물 장부가액}) / 50,000,000\text{원}(\text{유형자산 장부가액}) \times 36,000,000\text{원}(\text{건물 기준시가}) / 40,000,000\text{원}(\text{토지 + 건물 기준시가}) = 54,000,000\text{원}$

5. 다음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주)국제의 202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의제매입세액은 한도는 고려하지 않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1) 쌀과 활어를 각각 12,000,000원과 21,000,000원에 구입하였다.
- (2) 캐나다에서 가공하지 않은 바닷가재를 직수입하였으며 그 가액은 17,000,000원으로 관세가 2,000,000원 포함되어 있다.
- (3) 개인사업자인 대게수산으로부터 수확한 대게를 직접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18,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 (4) 위의 매입액 중 6월 말 기준 재고액 37,10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식재료로 사용되었다.
- (5)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한 적격증빙은 모두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답] 3,735,849원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84조

-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12,000,000\text{원} + 21,000,000\text{원} + 15,000,000\text{원} + 18,000,000\text{원}) \times 6 / 106 = 3,735,849\text{원}$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므로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때가 아니라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시 또는 확정신고 시 이므로 기말재고액이 있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주관식(약술형)

※ 반드시 OMR 카드 뒷면의 약술형 답안란에 답안을 작성하시오(연필 또는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금지).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서울의 제4기(2025.1.1.~ 2025.12.31.) 세무조정 자료이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여 제4기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답안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10점]

구분	취득일	당기 말		신고한 내용연수	신고한 상각방법	적용 상각률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업무용 승용차A	2025.07.01.	50,000,000원	7,000,000원	4년	정률법	0.528
업무용 승용차B	2025.10.05.	80,000,000원	2,000,000원	4년	정률법	0.528

(1) 업무용 승용차A는 전무이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감가상각비 외에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12,000,000원을 비용계상하였다. 업무용 승용차A에 대하여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2) 업무용 승용차B는 이사대우 부장이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위 감가상각비 외에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7,000,000원을 비용계상하였다. 당기 중 운행일지에 따른 총주행거리는 30,000km이며 이 중 업무용 사용거리는 27,000km이다.

[답안양식]

구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원)	소득처분	과목	금액(원)	소득처분
1						
2						
3						
합계						

[답] 법인세법 제27조의2

구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원)	소득처분	과목	금액(원)	소득처분
1	승용차A 감가상각비 ^(주1) (2점)	2,000,000원	유보			
2	승용차A 업무미사용액 ^(주1) (3점)	9,500,000원	상여			
3	승용차B 업무미사용액 ^(주2) (3점)	11,000,000원	상여	승용차B 감가상각비 ^(주2) (2점)	2,000,000원	△유보
합계		22,500,000원			2,000,000원	

^(주1)① $7,000,000\text{원} - 50,000,000\text{원} \times 1/5 \times 6/12 = 2,000,000\text{원}$

② $(5,000,000\text{원} + 12,000,000\text{원}) \times [1 - (15,000,000\text{원} \times 6/12) / 17,000,000\text{원}] = 9,500,000\text{원}$

③ $5,000,000\text{원} \times 7,500,000\text{원} / 17,000,000\text{원} - 8,000,000\text{원} \times 6/12 = (-) 1,794,117\text{원}$

→ 세무조정 없음(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 관련 조정 없음)

^(주2)① $2,000,000\text{원} - 80,000,000\text{원} \times 1/5 \times 3/12 = (-) 2,000,000\text{원}$

② $4,000,000\text{원} + 7,000,000\text{원} = 11,000,000\text{원}$

2.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기의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025.10.1.~ 2025.12.31.)의 과세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의 물음에 답하고, 계산 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2025년 제2기 확정	400,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00원
2025년 제2기 예정	300,000,000원	200,000,000원	500,000,000원
2025년 제1기 확정	200,000,000원	300,000,000원	500,000,000원
2025년 제1기 예정	100,000,000원	200,000,000원	300,000,000원

2. 당해 확정신고기간 중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취득일	공급가액
사업용 구축물	2021년 11월 30일	20,000,000원
업무용 승합차	2025년 9월 7일	5,000,000원

3. 2025년 제1기에 대손확정되어 대손세액 2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2025년 제2기 중 이와 관련된 채권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전액 회수되었다.

4. 당해 확정신고기간의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25년 제2기 예정	2025년 제2기 확정	합계
과세사업분	20,000,000원	30,000,000원 ^(주1)	50,000,000원
면세사업분	1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공통사업분	7,000,000원	9,000,000원 ^(주2)	16,000,000원

(주1)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1,000,000원 포함

(주2)당해 확정신고기간 중에 매각한 업무용승합차의 매입세액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2025년 말 현재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없다.
-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2025년 제2기 예정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고 가정한다.

<물음1>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물음2> 2025년 제2기 확정(2025.10.1.~ 2025.12.31.) 신고 시 매출세액합계액을 구하시오.

<물음3>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구하시오(예정신고기간 안분액 정산 포함).

<물음4> 2025년 제2기 확정(2025.10.1.~ 2025.12.31.) 신고 시 매출세액합계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구하시오.

[답]

〈물음1〉 9,375,000원(2점)

-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 $7,500,000\text{원} + 1,875,000\text{원} = 9,375,000\text{원}$
 - ① 사무용 구축물 : $20,000,000\text{원} \times 300,000,000\text{원} / 800,000,000\text{원} = 7,500,000\text{원}$
 - ② 업무용 승합차 : $5,000,000\text{원} \times 300,000,000\text{원} / 800,000,000\text{원} = 1,875,000\text{원}$

〈물음2〉 41,137,500원(2점)

- 과세표준 : $400,000,000\text{원} + 9,375,000\text{원}(\text{공통사용재화의 공급}) = 409,375,000\text{원}$
- 매출세액 : $409,375,000\text{원} \times 10\% + 200,000\text{원} = 41,137,500\text{원}$

〈물음3〉 2,650,000원(3점)

-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 ① + ② = $3,350,000\text{원} - 700,000\text{원} = 2,650,000\text{원}$
 - ① 확정신고기간 매입분 : $2,100,000\text{원} + 1,250,000\text{원} = 3,350,000\text{원}$
 - 일반 매입 : $(9,000,000\text{원} - 2,000,000\text{원}) \times 300,000,000\text{원} / 1,000,000,000\text{원} = 2,100,000\text{원}$
 - 승합차 매입 : $2,000,000\text{원} \times 500,000,000\text{원} / 800,000,000\text{원} = 1,250,000\text{원}$
 - ※ 공통 사용재화 중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 ② 예정신고기간 안분액 정산
$$= [(7,000,000\text{원} \times 300,000,000\text{원} / 1,000,000,000\text{원}) - (7,000,000\text{원} \times 200,000,000\text{원} / 500,000,000\text{원})] = (-) 700,000\text{원}$$

〈물음4〉 35,350,000원(3점)

-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 (1) + (2) + (3) + (4) = $35,350,000\text{원}$
 -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 $59,000,000\text{원}$
 - (2)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 $(-) 1,000,000\text{원}$
 - (3) 면세분 매입세액 : $(-) 20,000,000\text{원}$
 - (4)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 $(-) 2,650,000\text{원}$

세법2부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포함)

객관식

문항당 4점

1.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ㄴ.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ㄷ.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ㄹ.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ㅁ.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ㅁ

[답] ③ ㄱ, ㄷ, ㄹ

- ㄱ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 ㄷ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의 요건(승인 요건 없음)이다.
- ㄹ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의 요건(승인 요건 없음)이다.

2.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② 국세의 신고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③ 납세자의 부도발생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납세자가 도난을 당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답]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고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만 연장된다.

3.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
- ②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납부고지서의 우편송달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상 예정납부고지서 및 신고납부세목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답] ③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의 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으로,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 혹은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별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세공평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국세를 조사경정할 때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④ 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예로 볼 수 있다.

[답] ④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근거과세의 원칙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5.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는 없는 것으로 한다.

- ① 납세의무자 A가 300만원의 소득세를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내에 신고한 경우 세액은 300만원으로 확정된다.
- ② 2025년 납세의무자 B가 100만원의 소득세를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한 이후, 2028년 5월 31일에 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은 300만원으로 확정된다.
- ③ 납세의무자 C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2026년 5월 31일에 500만원의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신고 내용에 계산오류가 있어 감액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경정청구는 2031년 5월 31일(영업일에 해당)까지 할 수 있다.
- ④ 원래 신고하였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신고하여 감액 경정을 청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한 자이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해야 한다.

[답] ①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제45조의3 제1항, 기한 후 신고의 경우 확정력이 없다.

- ②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
- 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1항 제1호
-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1항 제1호

6. 다음 중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름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 ①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다.
- ② 재조사의 허용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 ③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국세청의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 사업장 현지확인이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

[답] ② 대법원 10두19294, 재조사의 허용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 ③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④ 대법원 14두8360

7.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주식에서 발행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③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 ④ 국내에서 대리인이 원천징수한 국외금융소득은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대상이 아니며,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이다.

[답] 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
-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8.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④ 배당소득이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답] ② 소득세법 제143조의4 제4항,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
- ③ 소득세법 제154조

④ 소득세법 제155조

9. 다음 중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에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의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로 계산한다.
-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에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 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10.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그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아닌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 ②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④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2천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 ④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1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③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②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공제한다.

①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12. 다음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 갑의 2025년 귀속 주택임대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2025년 귀속 주택임대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거주자 갑의 주택임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해당 주택 모두 주거로 사용되는 면적이 40m ² 를 넘는다.			
구분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세
주택A	2024.7.1. ~ 2026.6.30.	300,000,000원	-
주택B	2024.7.1. ~ 2027.6.30.	150,000,000원	1,000,000원
주택C	2024.9.1. ~ 2026.8.31.	400,000,000원	600,000원

(2) 거주자 갑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D가 추가로 있다.
 (3) 주택C의 보증금으로 발생한 배당금은 1,400,000원이 있다.
 (4) 2025년은 360일로, 정기예금이자율은 4%로 가정한다.
 (5) 추계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 ① 19,200,000원
- ② 31,000,000원
- ③ 32,400,000원
- ④ 38,200,000원

[답] ② 31,000,000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1) 월세의 총 수입금액 : 12,000,000원 + 7,200,000원 = 19,200,000원

- ① 주택B : $1,000,000\text{원} \times 12 = 12,000,000\text{원}$
- ② 주택C : $600,000\text{원} \times 12 = 7,200,000\text{원}$
- (2) 간주임대료의 계산 : $7,200,000\text{원} + 3,600,000\text{원} + 1,000,000\text{원} = 11,800,000\text{원}$
 - ① 주택A : $300,000,000\text{원} \times 360 \times 60\% \times 4\% \times 1/360 = 7,200,000\text{원}$
 - ② 주택B : $150,000,000\text{원} \times 360 \times 60\% \times 4\% \times 1/360 = 3,600,000\text{원}$
 - ③ 주택C : $(400,000,000\text{원} - 300,000,000\text{원}) \times 360 \times 60\% \times 4\% \times 1/360 - 1,400,000\text{원} = 1,000,000\text{원}$
- (3) 총수입금액 : $19,200,000\text{원} + 11,800,000\text{원} = 31,000,000\text{원}$

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업자는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답] ①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거주자에게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에 자에 대한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 ②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국외전출세를 과세한다.
- ③ 비거주자가 국내 원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 ④ 비거주자에게는 중간예납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답] ④ 소득세법 제124조 제1항,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①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
- ② 소득세법 제126조의3 제1항
- ③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15. 다음 중 소득세법의 주택양도소득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만 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② 공동상속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주택만 보유)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 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③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미만 보유한 기존주택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④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답] ④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55조 제3항

- ①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②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서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③ 기존주택이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관식(단답형)

문항당 4점

※ 반드시 OMR 카드 앞면의 주관식 답안란에 답안을 작성하시오(연필 또는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금지).

1.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계를 적으시오.

-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답] 100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를 적으시오.

- (1)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2)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답] 90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다음은 종합소득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자산이 체납처분된 나체납씨의 자료이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징수할 수 있는 조세채권금액을 구하시오.

(1)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미납액 : 28,000,000원(압류일 : 2025.3.31.)

(2) 압류자산의 매각액은 38,000,000원으로 경매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이 1,500,000원 발생하였다.

(3) 사용자인 나체납씨가 부담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

구분	금액	비고
최종 3월분의 임금	15,600,000원	나체납의 임금 2,500,000원 포함
직원 퇴직금	8,000,000원	최종 2년간의 퇴직금

(4) 나체납씨 본인 신용카드 대금 미납액 : 3,900,000원(체납처분된 압류재산에 2023.12.31. 담보 설정)

[답] 11,500,000원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

- (1) 매각액 : 38,000,000원 - 강제집행비용 1,500,000원 = 36,500,000원
- (2) 국세에 우선할 임금 및 채권 : 15,600,000원 - 2,500,000원 + 8,000,000원 = 21,100,000원
- (3) 법정기일 이전 피담보채권 : 3,900,000원
- (4) 과세관청이 징수할 수 있는 조세채권 : 36,500,000원 - 21,100,000원 - 3,900,000원 = 11,500,000원

4.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 A의 이자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1) 환매조건부 채권이자 : 5,000,000원

(2) 2021년 5월 1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여 2025년 5월 1일에 보험금을 만기 환급받았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환급보험금 : 10,000,000원

② 납입보험료 : 8,000,000원

③ 보험계약기간 중 보험계약에 의해 받은 배당금 : 1,000,000원(납입보험료와 상계하지 않음)

(3) 2025년 초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원금 30,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4,000,000원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2025.11.15.에 32,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4) 계약의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 5,000,000원

[답] 10,000,000원

• 소득세법 제16조

내역	금액
① 환매조건부 채권이자	5,000,000원
② 저축성 보험차익 ^(주1)	3,000,000원
③ 비영업대금이익 ^(주2)	2,000,000원
④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기타소득
합계액	10,000,000원

(주1) 10,000,000원(환급보험료) - 8,000,000원(납입보험료) + 1,000,000원(계약기간 중 배당금) = 3,000,000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납입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이를 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주2)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을(복식부기의무자)의 2025년 사업과 관련된 자료이다. 을의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인가?

-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60,000,000원이다.

(2) 손익계산서상 소득세는 1,000,000원이다.

(3) 2025년 중 취득가액 1,000,000원, 시가 2,000,000원의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였으며,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4)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 중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수증이익은 4,000,000원이다.

(5)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국내중소기업 배당금은 1,500,000원이다.

(6)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상장주식처분손실은 3,400,000원이다.

(7)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은 3,000,000원이다.

(8)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처분이익은 1,500,000원이다.

[답] 56,500,000원

• 소득세법 제17조, 제94조 및 시행령 제51조

- (1) 당기순이익 : 60,000,000원
- (2) 소득세 : 1,000,000원
- (3) 재고자산 가사용 : 2,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4) 자산수증이익(사업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4,000,000원
- (5) 중소기업 배당금(금융소득에 해당함) : 1,500,000원
- (6) 상장주식 처분손실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에 해당한다.
- (7)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중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이다.

(8)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아니다.

$$\therefore (1) + (2) + (3) - (4) - (5) = 56,500,000\text{원}$$

주관식(약술형)

※ 반드시 OMR 카드 뒷면의 약술형 답안란에 답안을 작성하시오(연필 또는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금지).

1. 과세전적부심사란 정식의 국세 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국세 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를 5가지 작성하시오. [10점]

[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사유 1개당 2점

1.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5.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거주자 병(45세)의 20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 거주자 병의 사업연도는 제10기이다. [10점]

- (1) 거주자 병의 20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였다.
- 매출액 : 280,000,000원
 - 매입액 : 180,000,000원(모두 재화의 매입액이다.)
 - 외주가공비 : 20,000,000원
 - 광고선전비 : 8,000,000원
 - 인건비 : 12,000,000원(직원 급여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2) 해당 매입 및 지출한 비용은 모두 증명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다.
- (3) 거주자 병은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은 80%, 기준경비율은 10%이다.
- (4) 거주자 병에게 해당 사업소득 외의 소득은 없으며, 종합소득공제는 5,000,000원으로 가정한다.
- (5)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20%로 가정한다(단, 추계신고 시 감면배제하기로 한다).
- (6) 거주자 병은 소득세법상 소규모사업자 및 성실사업자가 아니다.
- (7)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율은 2.8배로 한다.
- (8) 최저한세 및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음1〉 거주자 병이 복식장부기장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차감납부할세액을 구하시오.

〈물음2〉 거주자 병이 추계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차감납부할세액을 구하시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추계결정은 아니다.

[답]

〈물음1〉 4,882,000원 (5점)

1. 사업소득금액 : 6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 : 5,000,000원
3. 과세표준 : 55,000,000원
4. 산출세액 : $6,240,000\text{원} + (55,000,000\text{원} - 50,000,000\text{원}) \times 24\% = 7,440,000\text{원}$
5.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7,440,000\text{원} \times 20\% = 1,488,000\text{원}$
6. 세액공제 : ① + ② = 1,070,000원
 - ① 기장세액공제 : $\text{Min}(7,440,000\text{원} \times 20\%, 1,000,000\text{원}) = 1,000,000\text{원}$
 - ②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7. 차감납부할세액 : $7,440,000\text{원} - 1,488,000\text{원} - 1,070,000\text{원} = 4,882,000\text{원}$

<물음2> 4,718,000원 (5점)

1. 사업소득금액 Min(①, ②) : 40,000,000원

① $280,000,000\text{원} - 280,000,000\text{원} \times 10\% - (180,000,000\text{원} + 20,000,000\text{원} + 12,000,000\text{원}) = 40,000,000\text{원}$

② $(280,000,000\text{원} - 280,000,000\text{원} \times 80\%) \times 2.8\text{배} = 156,800,000\text{원}$

2. 종합소득공제 : 5,000,000원

3. 과세표준 : 35,000,000원

4. 산출세액 : $840,000\text{원} + (35,000,000\text{원} - 14,000,000\text{원}) \times 15\% = 3,990,000\text{원}$

5. 세액감면(추계 신고 시 감면배제) : 0원

6.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7.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가산세 : $3,990,000\text{원} \times 20\% = 798,000\text{원}$

8. 차감납부할세액 : $3,990,000\text{원} - 70,000\text{원} + 798,000\text{원} = 4,718,000\text{원}$